

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 
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4. 11. 26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 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 으로 함(안 제1조, 안 제5조제1항)
- 나.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” 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 으로 함(안 별표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 
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자동  
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
한다.

안 제1조 중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 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  
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 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  
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 으로 한다.

안 별표 중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” 을 “독립유공자·국가  
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 으로 한다.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우선계약)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,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우선계약) ① ----- ----- 제4조에 따른----- -----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, <u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</u>(이하 “장애인등”이라 한다)--- 장애인등이 2명 이상 ----- ----- ----- 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5조(우선계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수 정 안				
<b>[별표]</b>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(제5조 관련)					<b>[별표]</b>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(제5조제1항 관련)					<b>[별표]</b>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(제5조제1항 관련)				
순위	장애인	65세이상 노인	모자가정 의 여성	독립유공 자 유가족	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 족·한부 모가족복 지단체	독립유공 자·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	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 족·한부 모가족복 지단체	독립유공 자·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1	(생 략)				1	(현행과 같음)				1	(개정안과 같음)			
2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(생 략)	미과세 대상자	2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(현 행 과 같 음)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2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(개 정 안 과 같 음)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
3	미과세 대상자	-	<신 설>	-	3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-	한부모가족 복지단체	-	3	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(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)	-	한부모가족 복지단체	-